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65

발의연월일: 2022. 9. 6.

발 의 자:김희곤・구자근・김형동

김영식 • 박대수 • 안병길

윤재옥 • 이명수 • 이인선

전봉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새마을금고,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위의 제도들은 농어업인 서민 등의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그러나 코로나사태에 다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, 고물가,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어 농어민·서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, 농어민·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,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.

이에 새마을금고·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·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자 함(안 제167조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7조 중 "2022년"을 "202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	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 「조	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을	
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	<u>202</u>
<u>2년</u>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	5년
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	
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	
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	
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	
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	
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	
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	
세율로 한다.	